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 10.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장(안 별표 1 제2호다목)

-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비중요 규제, '26.9.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등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해당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6-70호, 2026.10.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1. 공통기준 가. ~ 나. (생 락) 2. 개별기준 가. ~ 나. (생 락) <u>다. <신 설></u>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등의 영 양성분 함량 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등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 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해당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은 「식 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 에 충족하여야 한다.</u>